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장 정 희 의원)

의 안 번 호	23-169
------------------	--------

발의년월일: 2023. 11. .

발의자: 장정희,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김승수, 오옥자, 이한동, 차해영,
한선미

1. 제정 이유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나.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조사·연구, 교육 훈련 등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관계 법령

- 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추후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3. 11. 16. ~ 11. 21.

나. 의견제출: 업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중에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